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24 발의연월일: 2021. 8. 19.

발 의 자: 유경준 · 김상훈 · 김용판

김은혜・박 진・서일준

송석준 • 이채익 • 정동만

태영호 • 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적 부품인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한 산업으로써, 단일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수출액 1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임.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과 수요를 앞세워 자국 내 반도체의 생산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 율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여 반도 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반도체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의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이하 이 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반도체 연구개발비에 제1호의 비율과 제2호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 나.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 2.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반도체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 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②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의 기계장

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중견 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 2.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를 각각 "제12조의5제2항, 제24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3조의2"를 "제12조의5, 제1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의3"을 "제12조의5,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 및 제12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5(반도체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
	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반도체의 연구
	개발에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반도체 연
	구개발비에 제1호의 비율과 제
	2호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
	<u>우: 100분의 40</u>
	<u>나.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u>
	<u>0</u>
	2.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
	액을 말한다)에서 반도체 연

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 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 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의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체의 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 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 하는 금액
- 2.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 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 제 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 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 감한다.

- 1. ~ 3. (생략)
-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 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u>제24조</u> 및 제26조가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 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네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제12조의5제2항, 제24조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의5제2항, 제24조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 ⑩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 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 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 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 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 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 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 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 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 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12조의5,
제13조의2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반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 12조의3, 제12조의4, <u>제13조의3,</u>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 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 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 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 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

·
2
제12조의5,
<u> </u>
-11107 010
제13소의3
제13조의3
세13소의3
세13소의3
세13조의3

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 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 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